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57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24. 9. 3.

판결 선고2024. 11.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본금이 2억 원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이다.
- 2)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2013. 8. 14.부터 2016. 8.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2016. 8. 15.부터 2019. 8. 1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C에 대한 주식 부여 및 급여 지급 경위

- 1)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설립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C에게 원고 주식 40%에 해당하는 8,000주를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C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C의 요청에 따라 그 주주 명의를 C의 동생 D, 연인관계인 E 앞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주명부에 D, E이 각 4,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었다.
- 2) C은 원고가 설립된 2013년경부터 원고의 상무이자 기술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신용상태에 따른 C의 요청으로 C에 대한 급여는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었고, 2014. 3. 1. 원고와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3) E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4. 4. 5.부터 2014. 12. 5.까지 9개월간 매월 1,900,000원씩 총 17,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아무런 근무를 하지 않은 E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2,000,000원, 2014년 1월 1,900,000원, 2014. 4. 5.부터 2014. 12. 5.까지 9개월 동안 매월 1,900,000원 합계 39,000,000원(= 2,000,000원 × 10개월 + 1,900,000원 × 9개월)을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가 동업자 관계에 있던 C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하여 E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C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은 상법 제398조 및 원고 정관 제38조(임원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에 위반한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의 의사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가 C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C의 사정을 고려하여 C이 E 명의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와 C 사이에 양자를 당사자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E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급여 17,100,000원은 C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E에게 지급한 급여가 39,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기간은 아직 원고가 설립되기 전이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기간의 경우 원고와 별개의 사업자인 'F' 상호로 E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원고가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은 D, E 명의로 원고 주식 40%를 보유한 주요주주로서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은 주요주주의 자기 거래로서 상법 제398조에 따라 미리 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C에게 보수 명목으로 17,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법령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법령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보수 지급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 상태에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급여 상당의 돈을 E 명의 계좌로 수령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같은 기간 실제로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C이 제공한 노무의 금전적 가치가 E 명의로 수령한 월 1,900,000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다) C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가 되므로, C이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한 노무에 관하여 원고가 C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가 한 보수 지급행위에 따라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두영